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1721 제출연월일: 2024. 7. 12.

제 출 자:정 부

제안이유

유선 및 도선사업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유선 및 도선사업의 체계를 면허사업으로 일원화하고, 유선 및 도선사업자의 유·도선 안전점검 결과 기록·관리, 안전관리 대책 수립 및 안전관리자지정 의무를 신설하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유·도선현대화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유선 및 도선사업자의 영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유선 및 도선사업자가 면허받은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만 변경면허를 받도록 하고, 박람회 등과 관련하여 단기간 유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정면허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선사업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1호)

새로운 사회적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고기잡이 및

관광 등으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는 유선사업의 범위에 체험, 축제 및 기념행사 등을 추가하여 유선사업의 범위를 확대함.

- 나. 유선 및 도선사업 체계를 면허사업으로 일원화(안 제3조제1항) 현행 유선 및 도선사업의 체계를 선박의 규모와 영업구역에 따라 면허사업과 신고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사업의 규모에 따른 시설기준 적용상의 차이만 있을 뿐 유선·도선의 선령 기준 및 유선·도선사업자의 결격사유 등 기본적인 사항을 면허사업과 신고사업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면허사업과 신고사업을 구분하여운영할 실효성이 크지 아니하므로, 유선 및 도선사업의 안전 및 편의시설 확보 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유선 및 도선사업 체계를 면허사업 체계로 일원화함.
- 다. 박람회 등을 위한 유선사업에 대하여 한정면허 도입(안 제3조제2 항)
 - 시·도지사 등 관할관청은 단기간 개최되는 박람회 등의 행사와 관련하여 유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유선사업 면허를 할 수 있음.
- 라. 유선 및 도선의 안전관리 강화(안 제12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안 제21조제3항·제4항 및 제21조의2 신설)
 - 1) 유선 및 도선사업자는 유선 및 도선의 안전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함.
 - 2) 유선 및 도선사업자는 유·도선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관리대

책을 수립하여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 3) 유선 및 도선사업자는 유선 및 도선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알려야 하며, 안전관리자가 유선 및 도선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
- 마. 유·도선 현대화계획 수립(안 제30조의3 신설)

유선 및 도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 경찰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유·도선 현대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법률 제 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을 "「해운법」 제2조제2호·제3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및 해상화물운송사업이 아닌"으로 한다.

1. "유선사업"이란 유선 및 유선장(遊船場)을 갖추고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또는 행사를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 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이 아닌 것을 말한다.

가. 체험, 공연, 축제, 연회 및 기념행사

나.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遊樂)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사업의 면허) ①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이하 "유·도선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관청(이하 "관할관청"이라 한다)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유·도선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유·도선사업자"라 한다)가 면허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유선장 및 도선장(이하 "유·도선장"이라 한다) 또는 영업구역이

내수면과 해수면에 걸쳐 있거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 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유·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

- 2.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
 - 가. 영업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운항거리가 5해리 이상인 경우: 해당유·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 나. 가목 외의 경우: 해당 유·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 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구청 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 3.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해당 유·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 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 4. 서울특별시의 한강에서 운항하는 유·도선의 경우: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 중 유·도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 의 장
- ② 관할관청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면허를 할 때 박람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와 관련된 유선사업의 경우에 는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

를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유·도선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 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면허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④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유·도선사업의 면허를 할 때에 그 영업구역이 내수면과 해수면에 걸쳐 있거나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유·도선장이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안에 있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⑤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유·도선사업의 면허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서장, 공원관리청, 경찰서장, 지방해양항만관서의 장과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도선사업만 해당한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한다.
- ⑥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유·도선사업의 면허를 할 때에 유·도선의 규모와 영업구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도선 사업의 경우에는 유·도선의 안전강화 및 편의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3조의2제1항 중 "유선사업의 면허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을 "제3조제3항에 따라 유선사업의 면허를 신청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청이나 신고를"을 "신청을"로, "면허를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하기"를 "면허를 하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협의가 완료된 경우유선사업의 면허를 발급받은 자나 신고가 수리된 자(이하 "유·도선사업자"라 한다)"를 "협의를 거쳐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면허를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한"을 "면허를 한"으로 한다.

제3조의3제6항 단서 중 "제6조제1항제5호"를 "제6조제5호"로 한다. 제4조 중 "종류별"을 "종류 및 유·도선의 규모별"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4조의2(면허의 기준) 관할관청은 유·도선사업의 면허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면허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유·도선사업 면허 신청자가 보유한 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船 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2. 유·도선사업 면허 신청자가 보유한 선박과 시설·장비·인력이 제4조의 시설기준 등에 적합할 것
 - 3. 유·도선사업 면허 신청자가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제5조의 제목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을 "(면허의 유효기간)"으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면허 또는 신고"를 "면허(한정면허는 제외한다)"로, "갱신받거나 신고를 갱 신하여야"를 "갱신받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 제한다.

- ① 제3조에 따른 면허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한정면허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으로 한다.
- 1. 유선사업: 10년. 다만, 연중 한시적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로 한다.
- 2. 도선사업: 영구. 다만, 연중 한시적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유·도선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 1.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이 법, 「물환경보전법」, 「선박법」, 「선박안전법」, 「선박의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선박직원법」, 「선원법」,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해운법」 또는 「항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이 법, 「물환경보전법」, 「선박법」, 「선박안전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선박직원법」, 「선원법」,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해운법」 또는 「항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4. 제9조제1항에 따라 유·도선사업의 면허가 취소(이 항 제1호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8조제6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그 사업의 폐쇄 또는 3개월"을 "3개월"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6조제1항 각 호"를 "제6조 각 호"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제6조제1항제5호"를 "제6조제5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6조제1항제1호"를 "제6조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물환경보전법」, 「해양환경관리법」, 그 밖의 관계 법령"을 "「물환경보전법」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그 밖의 관계 법령"을 "「물환경보전법」 또는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3조제1항, 제3조의3제3항"을 "제3조의3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4조의2제1항제1호"를 "제4조의2제1호"로 하

며, 같은 조 제2항 중 "폐쇄 또는"을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로 한다.

7의3. 제8조제4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기상특보 발효 시 유·도 선을 운항하거나 유·도선의 운항제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제1항 중 "선박의 안전을 점검하고 기상 상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선박의 안전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기상 상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치하고"를 "비치하여야 하고,"로, "안내하여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안전운항"을 "안전운항과 승객의 안전"으로, "소형 유선"을 "유선"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다.

- 12.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은 유선장이 아닌 곳에 유선을 매어두는 행위
- 13.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은 유선장이 아닌 곳에서 승객을 승선ㆍ하 선시키는 행위

제16조제1항 중 "선박의 안전을 점검하고 기상 상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의 안전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기 상 상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치하고"를 "비치하여야 하고,"로, "안내하여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안전운항"을 "안전운항과 승객의 안전"으로 하고, 같은 조에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차량을 운송하는 도선사업자와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운항 전 적재된 차량의 엔진 정지 확인
- 2. 차량 적재 후 승객의 차량 탑승 금지
- 3. 승객과 차량의 승선 · 하선 질서유지

제18조제1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은 도선장이 아닌 곳에 도선을 매어두는 행위
- 10.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은 도선장이 아닌 곳에서 승객을 승선·하 선시키거나 물건을 싣고 내리는 행위

제21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유·도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유·도선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시기 및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1조의2(안전관리자) ① 유·도선사업자는 유·도선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유·도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지정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알려야 한다. 안전관리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 ③ 유·도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이 실시하는 유·도선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정면 허를 받은 유선사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안전관리자가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한정면허를 받은 유선사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비상상황 대비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선박을 운항하는 유선사업자는 그 선박에 승선하려는 승객이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제1항에 따른 선박을 운항하는 도선사업자는 그 선박에 승선하려는 승객 또는 적

재하려는 물건의 운송의뢰인이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신고서 또는 적재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유선사업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하려는 승객의 신분과 제2항에 따른 승선신고서의 기재내용을 확인하여야 하고, 도선사업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하려는 승객의 신분 또는 적재하려는 물건과 제2항에 따른 승선신고서 또는 적재신고서의 기재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유·도선사업자는 승객 또는 물건의 운송의뢰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승선신고서 또는 적재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른 확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선 또는 적재를 거부하여야 한다.
- ⑤ 유·도선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승선신고서 또는 적재 신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25조의2제1항 중 "승선신고서"를 "승선신고서·적재신고서"로 한다. 제27조제9호를 삭제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시·도지사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

하고, 인명구조 활동 등 사고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과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의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인명구조 활동 등 사고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0조의3(유·도선 현대화계획)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 장은 유·도선 현대화를 위한 계획(이하 "유·도선 현대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유·도선 현대화계획을 수 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유·도선 현대화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유·도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약관을 정하여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면허를 신청할 때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유·도선사업자가 운항약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6조제2항 중 "제4조의2제1항제1호"를 "제4조의2제1호"로 한다. 제36조의2제1항 중 "면허 또는 신고"를 "면허"로 한다. 제37조 중 "면허취소·사업폐쇄"를 "면허취소"로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일부를 소속 기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관할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또는 그밖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1. 제4조의2제1호에 따른 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 기준 적합성 심사업무
 - 2. 제20조에 따른 안전검사 업무
 - 3.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 업무
 - 4. 제24조에 따른 유·도선사업자 등의 안전교육 업무
 -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 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0조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유선사업 또는 도선사업을 한 자
- 4. 「해상교통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제12조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선 또는 도선을 조종한 자

- 제41조에 제2호의2, 제2호의3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도선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승인 을 받지 아니한 자
- 2의3.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제4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유선사업자 또는 도선사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 사업 재개 또는 운항 재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3. 제12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선 또는 도선의 안 전을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결과를 기록 또는 관리하지 아니한 자
 - 4. 제12조제2항 또는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에 관한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하여 비치하지 아니한 자
 - 5. 제12조제4항 또는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 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 6. 제12조제5항제10호 또는 제18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수상에 유류·분뇨 또는 폐기물을 버린 자

- 7. 제12조제5항제12호 또는 제18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사업의 면 허를 받은 유선장 또는 도선장이 아닌 곳에 유선 또는 도선을 매 어둔 자
- 8. 제12조제5항제13호 또는 제18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하여 사업의 면허를 받은 유선장 또는 도선장이 아닌 곳에서 승객을 승선 또는 하선시키거나 물건을 싣거나 내린 자
- 9. 제13조제2항(제1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 10.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객의 출선 요구를 거부하거나 출선을 지연시킨 자
- 11.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운항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12.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지정 또는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 13.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소 안에 선원 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 14.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비상상황 대비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 15.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의 출항 또는 입항에 관한 사항을 기록 또는 관리하지 아니한 자
- 16.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객 또는 물건의 운송의뢰인에게 승선

신고서 또는 적재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 17.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선하려는 승객의 신분 또는 적재하려는 물건과 승선신고서 또는 적재신고서의 기재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한 자
- 18.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선신고서 또는 적재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유·도선사업자의 확인 요구에 따르지아니한 승객 또는 물건의 운송의뢰인에 대하여 승선 또는 적재를 거부하지 아니한 자
- 19.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승선신고서 또는 적재신고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 20.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고발생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1.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항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22.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항약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3.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4. 제35조를 위반하여 요금 등을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아니한 자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에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해운법」 또는 「항만법」을 위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결격사유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1항에 따라 유·도선사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폐쇄(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여 사업이 폐쇄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도선사업의 면허를 신청할 수 없다.
- 제4조(행정처분에 관한 특례 등) 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따른다.
 - ②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유·도선사업의 면허 또는 변경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종전의 제9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폐쇄"를 "면허의 취소"로 보아 종전의 제9조를 적용한다.
- 제5조(신고를 한 유·도선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1항에 따라 유·도선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 신고가 수리된 유·도선사업자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도선사업의 면허 또는 변경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2항에 따라 유·도선사업의 갱신신고를 하여 신고가 수리된 유·도선사업자는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도선사업의 면허를 갱신받은 것으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라 유·도선사업의 면허 또는 변경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유·도선사업의 신고수리를 통지받은 날을 면허 또는 변경면허를 받은 날로보며, 유·도선사업의 면허를 갱신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5조제3항에 따라 유·도선사업의 갱신신고수리를 통지받거나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유·도선사업의 갱신신고를 수리한 것으로보는 날을 면허를 갱신받은 날로본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1항에 따른 유·도선사업의 신고·변경신고 또는 종전의 제5조제2항에 따라 갱신신고를 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신고수리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면허·변경면허 또는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면허의 갱신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제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호 중 "「유선 및 도선사업법」"을 "「유선 및 도선 사업법」"으로 한다.

②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유선 및 도선사업법」"을 "「유선 및 도선 사업법」"으로 한다.

③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3) 중 "「유선 및 도선사업법」"을 "「유선 및 도선사업법」"으로, "면허를 받거나 신고된"을 "면허를 받은"으로 한다.

④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유선 및 도선사업법」"을 "「유선 및 도선사업법」"으로 한다.

⑤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제3호 중 "「유선 및 도선사업법」"을 "「유선 및 도선사업법」"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선사업"이란 유선 및 유선| 1. "유선사업"이란 유선 및 유선 장(遊船場)을 갖추고 수상에 장(遊船場)을 갖추고 수상에 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 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락(遊樂)을 위하여 선박을 대 해당하는 활동 또는 행사를 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사 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 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 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운송사업이 아닌 것을 말한다. <u>가. 체험, 공연, 축</u>제, 연회 및 기념행사 나.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遊樂) 2. "도선사업"이란 도선 및 도선 장을 갖추고 내수면 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목에 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 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 ----- 「해운법」 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제2조제2호・제3호에 따른 해 말하다. 상여객운송사업 및 해상화물 운송사업이 아닌 -----

3. ~ 6. (생략)

제3조(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① 제3조(사업의 면허) ① 유선사업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이하"유 •도선사업"이라 한다)을 하려 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 · 도선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면허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 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유선장 및 도선장(이하 "유・ 도선장"이라 한다) 또는 영업 구역이 내수면과 해수면에 걸 쳐 있거나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 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 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유ㆍ도선을 주로 매어두 는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

2.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

3. ~ 6. (현행과 같음)

및 도선사업(이하 "유·도선사 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 관청(이하 "관할관청"이라 한 다)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유ㆍ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 하 "유·도선사업자"라 한다)가 면허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 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유선장 및 도선장(이하 "유ㆍ 도선장"이라 한다) 또는 영업 구역이 내수면과 해수면에 걸 쳐 있거나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 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 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유ㆍ도선을 주로 매어두 는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
 ·군수·구청장"이라 한다).

 다만, 영업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
 군·구"라 한다)의 관할구역
 에 걸쳐 있고 운항거리가 5해
 리 이상인 경우에는 시·도지
 사, 운항거리가 5해리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유·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 3.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해당 유·도선을 주로 매어두

 는 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

 서장
- 4. 서울특별시의 한강에서 운항 하는 유·도선의 경우: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 중 유·도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
-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면허신 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할관청 (이하 "관할관청"이라 한다)은

- 2.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

 가. 영업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운항거리가 5해리 이상인 경우: 해당 유·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 나. 가목 외의 경우: 해당 유

 ·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
 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
 장·군수·구청장(구청장
 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
 한다. 이하 같다)
- 3.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해당 유·도선을 주로 매어두 는 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 선장
- 4. 서울특별시의 한강에서 운항 하는 유·도선의 경우: 서울특 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 무 중 유·도선에 관한 업무

유·도선사업의 면허를 발급하 거나 신고를 수리(受理)할 때에 그 영업구역이 내수면과 해수면 에 걸쳐 있거나 둘 이상의 시· 도 또는 시·군·구에 걸쳐 있 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 해양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서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유 ·도선장이 「자연공원법」 제 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과 미 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할관청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같은 항 각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른 기 간 이내에 수리여부를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 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 算)하여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신고의 경우 7일, 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

② 관할관청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면허를 할때 박람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와 관련된 유선사업의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유·도선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면허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유
·도선사업의 면허를 할 때에
그 영업구역이 내수면과 해수면
에 걸쳐 있거나 둘 이상의 시ㆍ
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
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
해양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서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유
·도선장이 「자연공원법」 제
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과 미
리 협의하여야 한다.

에 따른 변경신고의 경우 5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 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전자문서를 포 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관할관청은 유·도선사업의 면허를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 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 나 해양경찰서장, 공원관리청, 경찰서장, 지방해양항만관서의 장과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도선사업만 해당한 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에 각각 통보 하여야 한다.

⑥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면 허를 발급할 때에 유·도선의 안전강화 및 편의시설 확보 등 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 다.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⑤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유 •도선사업의 면허를 하였을 때 에는 그 내용을 관계 시·도지 사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나 해양경 찰서장, 공원관리청. 경찰서장. 지방해양항만관서의 장과 「도 로법 |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 청(도선사업만 해당한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⑥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유 •도선사업의 면허를 할 때에 유 · 도선의 규모와 영업구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도선사업의 경우에는 유· 도선의 안전강화 및 편의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	3조의]2([관광	}진-	흥법	ا ه		叫	른
	관광	사업	등록	= 0]제)	1	유	선	사
	업을	하려	는 >	자로	.서	「괸	광	진	훙
	법」	제3	조제]1항	제3	호어		따	른
	관광	객 이	용시]설(업 중	5 A	-선	사	업
	과 관	난 런된	! 업((0)	하 "	일빈	:관	광	유
	람선	업"이	라	한디	나)을	하	려는	=	자
	는 <u>유</u>	-선시	업으] 면	허틀	를 신	청	하	거
	나 /	신고들		<u>탈</u> 1	때	「괸	광	진	훙
	법」	제4:	조에	따	라	일빈	:관	광	유
	람선	업의	등록	뉴에	필요	2한	서	류	를
	함께	제출	할	수	있다				
						_	_		

- ②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나 신고를 받은 경우 유선사업의 면허를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일반관광유람선업 등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u>협의가 완료된</u> 경우 유선사업의 면허를 발급받은 자나 신고가 수리된 자(이하 "유·도선사업자"라 한다)는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제3조의2(「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등록 의제) ①
제3조제3항에 따라 유선사
업의 면허를 신청할
· ② 신
호 청을
<u> </u>
<u>한어글 이기</u>
③ 협의를 거쳐
<u>유선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u>

따라 일반관광유람선업의 등록 을 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관할관청은 유선사업의 면허를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경우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제3조의3(사업의 승계) ① ~ ⑤ (생 략)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계인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하여임명한 경우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개월이내에 그 유·도선사업을 다른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시설기준 등) 유·도선사업
자는 사업의 <u>종류별</u>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선
박과 시설·장비·인력을 갖추
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
다.

	4
	면허를 한
제	3조의3(사업의 승계)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u>
	제6조제5
	<u>호</u>
제	4조(시설기준 등)
	<u>종류 및 유·도선</u>
	의 규모별

- 제4조의2(면허의 기준) ① 관할관 청은 유·도선사업의 면허를 하 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 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면허 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유·도선사업 면허 신청자가보유한 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船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 2. 유·도선사업 면허 신청자가

 보유한 선박과 시설·장비·

 인력이 제4조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 ② 관할관청은 유·도선사업을 신고하려는 자가 보유한 선박의 선령이 제1항제1호의 기준에 적 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 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5조(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 간) ① 제3조에 따른 유선사업 의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 은 10년으로 하되, 연중 한시적 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 제4조의2(면허의 기준) 관할관청 은 유·도선사업의 면허를 하려 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면허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 1. 유·도선사업 면허 신청자가

 보유한 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船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2. 유·도선사업 면허 신청자가

 보유한 선박과 시설·장비·

 인력이 제4조의 시설기준 등

 에 적합할 것
 - 3. 유·도선사업 면허 신청자가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 당하지 아니할 것

제5조(면허의 유효기간) ① 제3조 에 따른 면허의 유효기간은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 만, 한정면허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으로 한다.

연도로만 하며, 도선사업의 면 1. 유선사업: 10년, 다만, 연중 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은 영 구로 하되, 연중 한시적으로 영 업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면허 또는 신 고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 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행정 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를 갱 신받거나 신고를 갱신하여야 한 다.
- ③ 관할관청은 제2항에 따른 갱 신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관할관청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 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 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 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 한 것으로 본다.

- 한시적으로 영업하는 경우에 는 해당 연도로 한다.
- 2. 도선사업: 영구. 다만, 연중 한시적으로 영업하는 경우에 는 5년으로 한다.

2		면허(한정면허
느	제외한다)	
		갱
<u>신</u> 년	<u> </u>	
<스	남 제>	

<삭 제>

제6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

- 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다.
- 1.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 는 피한정후견인
- 2. 이 법, 「선박안전법」, 「선 박법」, 「선박직원법」, 「선 원법」, 「해상교통안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해| 양환경관리법 | 을 위반하여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 | 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선박안전법」, 「선 박법」,「선박직원법」,「선 원법 , 「해상교통안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해」 양환경관리법 | 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 에 있는 사람
- 4. 제9조제1항에 따라 유·도선 사업의 면허가 취소(이 항 제1 호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 지나지 아니한 자

- 조에 따른 유·도선사업의 면허 에 따른 유·도선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 는 피한정후견인
 - 2. 이 법, 「물환경보전법」, 「선박법」, 「선박안전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선박직원법」, 「선원법」, 「수상에서의 수 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해양 환경관리법」, 「해운법」 또 - 는 「항만법」을 위반하여 금 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이 법, 「물환경보전법」, 「선박법」, 「선박안전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선박직원법」, 「선원법」, 「수상에서의 수 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u>「해상교통안전법」,</u> 「해양 환경관리법」, 「해운법」 또 는 「항만법」을 위반하여 금

-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

 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유·도선 사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사업이 폐쇄(이 조 제1항제1 호에 해당하여 사업이 폐쇄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고는 제3조에 따 른 유·도선사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 제8조(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등) ① ~ ⑤ (생 략)
 - 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제5항에 따라 운항이 허용된 경우에도 해당 영업구역의 실제 기상상태를 확인하여 안전운항에 지장이 있다고판단할 때에는 유·도선의 운항을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행정처분) ① 관할관청은 저유·도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업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사업의 폐쇄 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일부 또

- 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 에 있는 사람
- 4. 제9조제1항에 따라 유·도선
 사업의 면허가 취소(이 항 제1
 호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람이 있는 법인

제8조(영	업구역	및 영	업시간	등)
① ~	⑤ (현	행과 같	음)	

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
사, 시장·군수·구청장
9조(행정처분) ①

----- <u>3개월</u> --

는	전.	부의	정	지를	명	할	수	있던	十.
다	만,	제1.	호 •	제23	호	및	제	8호	에
해	당ㅎ	하는	경-	우에?	느	コ	入	-업	의
면	허틭	를 취	소ㅎ	ो जे ०)}	한디	7.		

- 1. <u>제6조제1항 각 호</u>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법인이 <u>제6조제1항제5호</u> 에 해당하는 경우에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하여 임명한 경우
 - 나. 유·도선사업자의 상속인
 이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상속인
 이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유·도선사업을 다
 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 2. ~ 4. (생략)
- 5. 「선박안전법」,「선박법」,「선박직원법」,「선박직원법」,「물환경보전법」,「해양환경관리법」,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 6. 제3조제1항, 제3조의3제3항,

·
1. 제6조 각 호
가 제6조제5호
<u> </u>
나
<u>제6조제1호</u>
2. ~ 4. (현행과 같음)
Ö
전법」 또는 「해양환경관리
법
<u> </u>
5 제3조의3제3항

제7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4 조제1항 · 제2항에 따른 신고 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 고를 한 경우

7.·7의2. (생략) <신설>

- 8. <u>제4조의2제1항제1호</u>에 따른 선령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 우
- ② 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경찰 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도선 사업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u>폐쇄</u> 또는 정지를 명하려면 미리 관 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제12조(유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 제의무) ① 유선사업자와 선원은 선박의 안전을 점검하고 기상 상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승

7. • 7의2. (현행과 같음)
7의3. 제8조제4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기상특보 발효 시
유·도선을 운항하거나 유·
도선의 운항제한에 따르지 아
니한 경우
8. 제4조의2제1호
②
2
ام ار
<u>사업</u>
<u>의 일부 또는 전부의</u>
③・④ (현행과 같음)
∥12조(유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의 안전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 • 관리하여야 하며,

객에게 위해(危害)가 없도록 수면(水面)의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유선을 조종하도록 하여야한다.

② 유선사업자와 선원은 다음 각 호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매 뉴얼로 작성하여 유선장 및 행 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유선의 선실이나 통로에 <u>비치하고</u> 출항하기 전에 승객에게 영상물 상영 또는 방 송 등을 통하여 <u>안내하여야</u> 한 다.

1. ~ 5. (생략)

- ③ (생략)
- ④ 유선사업자와 선원은 <u>안전운</u> <u>항</u>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소형 유선</u>의경우에는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유선사업자, 선원, 그 밖의 종사자는 유선 및 유선장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상 상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
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
②
<u>비치하여야 하고,</u>
<u>다음 각 호의</u>
사항을 안내하여야

1. ~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u>안전운</u>
항과 승객의 안전
<u>유선</u>
⑤

1. ~ 11. (생 략) <u><신 설></u>

<신 설>

- 제16조(도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 저의무) ① 도선사업자와 선원은 선박의 안전을 점검하고 기상 상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승객과 적재물에 위해가 없도록 수면의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도선을 조종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도선사업자와 선원은 다음 각 호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매 뉴얼로 작성하여 도선장 및 행 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도선의 선실이나 통로에 <u>비치하고</u> 출항하기 전에 승객에게 영상물 상영 또는 방 송 등을 통하여 <u>안내하여야</u> 한 다.

- 1. ~ 11. (현행과 같음)
- 12.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은 유

 선장이 아닌 곳에 유선을 매

 어두는 행위
- 13.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은 유 선장이 아닌 곳에서 승객을 승선·하선시키는 행위

세16조(도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의 안전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 • 관리하여야 하며,
기상 상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
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u>.</u>
②
비치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 1. ~ 5. (생략)
- ③ (생략)
- ④ 도선사업자와 선원은 <u>안전운</u> 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형 도선의경우에는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u><신 설></u>

제18조(승선 또는 선적의 제한 등) ① 도선사업자, 선원, 그 밖의 종사자는 도선과 도선장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8. (생 략) <신 설>

1. ~	5.	(현행과	같음)
------	----	------	-----

- ③ (현행과 같음)
- ④ ---- 안전운

 항과 승객의 안전----

----.

- ⑤ 차량을 운송하는 도선사업자 와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 다.
- 1. 운항 전 적재된 차량의 엔진 정지 확인
- 2. 차량 적재 후 승객의 차량 탑승 금지
- 3. 승객과 차량의 승선·하선 질서유지

제18조(승선 또는 선적의 제한 등) ① -----

----**.**

- 1. ~ 8. (현행과 같음)
- 9.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은 도 선장이 아닌 곳에 도선을 매

<신 설>

② (생략)

제21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21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②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어두는 행위

- 10.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은 도 선장이 아닌 곳에서 승객을 <u>승선·하선</u>시키거나 물건을 싣고 내리는 행위
- ② (현행과 같음)
- ① · ② (현행과 같음)
 - ③ 유·도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유·도선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 ④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대책 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안전관 리대책의 수립 시기 및 승인 절 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의2(안전관리자) ① 유·도 선사업자는 유·도선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 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유·도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지정한 때에 는 행정안전부렁 또는 해양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24조의2(선원 등의 비상상황 대비훈련) ① 유·도선사업자는 유·도선에 승선하는 다음 각호의 사람(「선원법」 제15조제 1항에 따라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비상상황 대비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사실을 1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알려야 한다. 안전관리자를 변 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유·도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가 행정안전부 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이 실시하는 유·도선 안전관리에 관한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경우 한정면허를 받은 유선사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안전관리자가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자격기준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세24조의2(선원 등의 비상상황 대	귀
비훈련) ①	-
	_
	_
	_
	_
	_
	정
면허를 받은 유선사업자는 그	7

1. • 2. (생 략)

② (생략)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선박을 운항 하는 유·도선사업자는 그 선 박에 승선하는 승객이 행정안 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신고서 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야 한다.

③ 유·도선사업자는 행정안전 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하려는 승객의 신분과 제2항에 따른 승선신고서 기재내용을 확인하 여야 한다.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비상상황 대비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출항・입항의 기록・관리 제25조(출항・입항의 기록・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선박을 운항하 는 유선사업자는 그 선박에 승 선하려는 승객이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신고서를 작성하 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제 1항에 따른 선박을 운항하는 도 선사업자는 그 선박에 승선하려 는 승객 또는 적재하려는 물건 의 운송의뢰인이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신고서 또는 적 재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 록 하여야 한다.

> ③ 유선사업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하려는 승객의 신분과 제2항에 따른 승선신고 서의 기재내용을 확인하여야 하 고, 도선사업자는 행정안전부령

④ 유·도선사업자는 승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른 신분확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

⑤ 유·도선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승선신고서를 3 개월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25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25조에 따른 출항·입항의 기록·관리 및 <u>승</u> 선신고서 작성·제출 등의 업무 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하려는 승객의 신분 또는 적재하려는 물건과 제2항에 따른 승선신고서 또는 적재신고서의 기재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유·도선사업자는 승객 또는 물건의 운송의뢰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승선신고 서 또는 적재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른 확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선 또는 적재를 거부하여야 한다.

⑤ 유·도선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승선신고서 또는 적재신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 다.

세25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
순영) ①	
	<u>승</u>
선신고서 • 적재신고서	

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

- 제27조(개선명령 등) 관할관청은 유·도선의 안전사고 예방과 공 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 도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 1. ~ 8. (생략)
 - 9. 제33조에 따른 보험 등에의 가입
 - 10. (생략)
- 제29조(사고발생의 보고) ① 유· 도선사업자와 선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지체 없이 인접 <u>시장·</u> 군수·구청장과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 고하여야 한다.
 - 1. ~ 3. (생 략) <신 설>

,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개선명령 등)
.
1. ~ 8. (현행과 같음)
<u><삭 제></u>
10. (현행과 같음)
제29조(사고발생의 보고) ①
특별
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
<u>장 • 군수 • 구청장</u>
1. ~ 3. (생 략)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
사, 시장・군수・구청장과 경찰
서장・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의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인명
구조 활동 등 사고 수습을 위하
<u>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

② 시장·군수·구청장과 경찰 서장·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의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해양경찰 청장에게 보고하고, 인명구조 활동 등 사고 수습을 위하여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32조(운항약관) ① 유·도선사 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운항약관을 정하여 사 업면허의 신청 또는 사업신고를 할 때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u>③</u>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제30조의3(유·도선 현대화계획)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유·도선 현대화를 위한 계획(이하 "유·도선 현대화 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 찰청장은 유·도선 현대화계획 을 수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 다.
- ③ 유·도선 현대화계획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32조(운항약관) ① 유·도선사 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약관을 정하여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면허를 신청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도 또한 같다.

- ② ~ ④ (생 략)
- 제36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생략)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이 <u>제4조의 2제1항제1호에</u>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선령에 가까워 져서 유선 또는 도선을 새로 건조(建造)하려는 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선 또는 도선의 건조에 드는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 ③ (생략)
- 제36조의2(손실보상을 위한 조치 등) ① 관할관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육지와 도서 간의 연륙교(連陸橋) 또는 도서와 도서 간

	할 때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유・도선사업자가 운항약
	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	86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현
	행과 같음)
	2
	<u>제4조</u>
	의2제1호
	<u>.</u>
	③ (현행과 같음)
제	36조의2(손실보상을 위한 조치
	등) ①

의 연도교(連島橋) 건설에 따라 도선사업자가 손실을 입은 때에 는 해당 도선사업자가 제3조에 따른 면허 또는 신고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적절한 보상 을 받을 수 있도록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37조(청문) 관할관청은 제9조제 1항에 따라 유·도선사업의 <u>면</u> 허취소·사업폐쇄 또는 사업정 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8조(권한의 위임 등) ① 시· 도지사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 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 시장·군수·구 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위 임할 수 있다.

② 관할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에 따른 검사업무 및 제24조에 따른 교육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형

<u>면허</u>
② (현행과 같음)
제37조(청문)
<u>면</u>
<u> 허취소</u>
,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관할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업무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원 또는 그 밖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 원으로 본다.

-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 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도선사업 을 한 자
 - 2. · 3. (생략)
 - 항을 위반하여 유선 또는 도 선을 조종한 자

- 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1. 제4조의2제1호에 따른 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 기준 적합 성 심사 업무
 - 2. 제20조에 따른 안전검사 업
 - 3.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 관리자에 대한 교육 업무
 - 4. 제24조에 따른 유·도선사업 자 등의 안전교육 업무
 -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를 수행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 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0조(벌칙)	

- 를 받지 아니하고 유선사업 또는 도선사업을 한 자
 - 2. · 3. (현행과 같음)
- 4. 제12조제3항 또는 제16조제3 4. 「해상교통안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제12조 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을 위

5. ~ 9. (생 략)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41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 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략)

<신 설>

<신 설>

3. (생략) <신 설>

-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 1. 제7조제1항, 제12조제4항, 제 12조제5항제10호, 제15조제2 항, 제16조제4항, 제18조제1항 제7호, 제23조제2항, 제24조의

반하여 유선 또는 도선을 조 <u>종</u>한 자

5. ~ 9. (현행과 같음)

- 1. · 2. (현행과 같음)
- 2의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도선 안전관리대책에 대 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 2의3.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 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지 아 니한 자
- 3. (현행과 같음)
- 4.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 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 니한 자
-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 1. 제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유선사업자 또는 도선사업자 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아 니한 자

- 2제1항, 제25조, 제29조제1항,제31조제2항, 제34조제1항・제2항 또는 제35조를 위반한자
- 2. 제13조제2항(제19조제2항에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 3. 제12조제2항 또는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에 관한사항을 매뉴얼로 작성하여 비치하지 아니한 자

- 2.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
 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 사업
 재개 또는 운항 재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3. 제12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 항을 위반하여 유선 또는 도 선의 안전을 점검하지 아니하 거나 점검결과를 기록 또는 관리하지 아니한 자
- 4. 제12조제2항 또는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에 관한사항을 매뉴얼로 작성하여 비치하지 아니한 자
- 5. 제12조제4항 또는 제16조제4
 항을 위반하여 승선자 전원에
 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
 지 아니한 자
- 6. 제12조제5항제10호 또는 제18
 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수
 상에 유류・분뇨 또는 폐기물
 을 버린 자
- 7. 제12조제5항제12호 또는 제18 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사 업의 면허를 받은 유선장 또는 도선장이 아닌 곳에 유선 또는 도선을 매어둔 자

- 8. 제12조제5항제13호 또는 제18 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하여 사업의 면허를 받은 유선장 또는 도선장이 아닌 곳에서 승객을 승선 또는 하선시키거나물건을 싣거나 내린 자
- 9. 제13조제2항(제1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을 위반한 자
- 10.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 객의 출선 요구를 거부하거 나 출선을 지연시킨 자
- 11.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 전운항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12.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지정 또는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 13.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소 안에 선원 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 14.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비상상황 대비훈련을 실시하 지 아니한 자
- 15.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 박의 출항 또는 입항에 관한

- 사항을 기록 또는 관리하지 아니한 자
- 16.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 객 또는 물건의 운송의뢰인 에게 승선신고서 또는 적재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 록 하지 아니한 자
- 17.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선하려는 승객의 신분 또는 적재하려는 물건과 승선신고 서 또는 적재신고서의 기재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한 자
- 18.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선 선신고서 또는 적재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유·도선사업자의 확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승객 또는 물건의 운송의뢰인에 대하여 승선 또는 적재를 거부하지 아니한 자
- 19.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승 선신고서 또는 적재신고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 20.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 고발생의 보고를 하지 아니 한 자

- 21.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

 항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22.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

 항약관 신고 또는 변경신고

 를 하지 아니한 자
- 23.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승선료, 선박 대여 료 또는 운임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4. 제35조를 위반하여 요금 등을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아니한 자
- ② (현행과 같음)

② (생략)